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4.06.11 (수) 15:00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고,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및 수수료 납부방법 명확화(안 제5조)
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⇒ 식품의약품안전처장
- 수수료를 수입증지 계기로 납부

나. 수수료 면제 항목 변경 및 추가(안 제6조)

- 각급 학교장 ⇒ 학교의 장,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

다. 수수료 및 검체 처리 규정 변경(안 제8조)

- 제목 변경 :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⇒ 검체의 처리
- 검체 ⇒ 검체(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 경우)

라. 닭·오리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(별표 2)

- 닭 : 6원/마리당, 오리 : 12원/마리당

마. 상위법에 맞게 검사·시험성적서 내용변경(안 별지 제3호 서식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닭과 오리의 도축시에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닭·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업무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